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PHO38』 정보공개서

(주)트렌차이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트렌차이즈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및 최종 등록일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16054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6. 06. 1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 10. 25	
『PHO38』 가맹사업본부 (주)트렌차이즈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42-1		
전화번호	070-7730-4032	팩스번호	02-400-7067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070-7730-4032
홈페이지	www.pho38.co.kr	담당자 이메일	trendchise@gmail.com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가맹본부 소개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가맹본부 소개



Eat Smart, Think Delicious.

참신한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트렌차이즈

(주)트렌차이즈는 다년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활동해온 전문가 그룹으로 이루어진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입니다. 유행(TREND)와 프랜차이즈(FRANCHISE)의 결합어인 TRENCHISE를 기업명으로 하여 지지 않는 유행을 창조, 선두하여 창업 시장에서의 불패를 위한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다양한 먹거리 문화가 창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창업 시장에서 외식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업자에게는 확실한 성공을, 소비자에게는 이로운 소비를 제공하고자 하는 다짐은 'Eat Smart, Think Delicious (똑똑하게 먹고, 맛있게 생각하기)' 라는 슬로건을 통해 알 수 있듯 트렌차이즈의 가장 우선되는 기업 가치입니다.

Identity.

보수적인 창업 전략이 필요한 시대.

지속되는 저성장 시대, 저렴한 메뉴를 통한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혼밥족과 혼술족이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잡은 연유로 대형 매장은 비효율성은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어 단순화된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쌀국수인가?

제품 공급에 대한 편의성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고 쉬운 조리해 최적화 되어 있는 메뉴가 쌀국수입니다. 고객의 가치 지향에 있어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쌀국수 전문점 시장이 안착된 한국에서 쌀국수는 대표성을 이미 획득한 메뉴입니다.

왜 PH038인가?

비싼 메뉴, 가끔 한 번 먹는 만 원이 넘는 음식 쌀국수. PH038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보편적인 가격을 넘어 저렴한 가격에 같은 퀄리티의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파격적인 가성비의 제공으로 고객의 눈길과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다년간의 다양한 외식업에 대한 노하우가 이를 가능케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주)트렌차이즈	영업표지	PH038 외 6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42-1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6.02.15	2016.02.15	김재훈	070-7730-4032	02-400-7067
법인등록번호	110111-5972199	사업자등록번호	764-86-00355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김재훈/ (주)트렌차이즈	PH038외 6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42-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재훈	070-7730-4032	02-400-706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PHO38』	
상 호	『PHO38』 점	
상표(서비스표)	PHO38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4500683110000
광 고	1. 가맹본부 소개 참조	
그 밖의 영업표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사로고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별첨1 참조)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015,147	149,168	865,978	1,677,040	87,885	102,977
2022년	1,177,488	592,518	584,970	2,090,188	-9,359	13,778
2023년	1,368,028	754,722	613,306	3,224,866	51,876	28,335

☞ 근거자료는 별첨의 재무제표입니다.

2)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 당사는 PHO38 외에 [아리가또맘마, 밀회관, 미래파, 유어오븐, 티프리피자]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나 각 가맹사업 별로 매출액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은 모두 가맹사업 관련 임원이며,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은 없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임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재직 회사 및 직위	담당 업무
김재훈	대표이사	2011.01.24. ~ 2016.05.31	트렌차이즈 대표	업무 총괄
		2016.02.15 ~ 현재	(주)트렌차이즈 대표이사	업무 총괄

☞ 트렌차이즈는 2016.07.01에 (주)트렌차이즈에 인수되었습니다.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1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트렌차이즈/ 아리가또맘마	가맹사업 경영	2011.03~현재	기타 외국식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10100228
	(주)트렌차이즈/ 밀회관	가맹사업 경영	2018.06.~현재	주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90495
	(주)트렌차이즈/ 미래파	가맹사업 경영	2021.08.~현재	주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1838
	(주)트렌차이즈/ 유어오븐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중	커피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3059
	(주)트렌차이즈/ 티프리피자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중	피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4739
	(주)트렌차이즈/ 생마차	가맹사업 경영	2023.08.~현재	주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209

☞ 당사는 2016.07.01에 트렌차이즈의 [아리가또맘마] 가맹사업을 인수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서비스표 PHO38	29류, 35류, 43류	등록 2016.09.30	출원번호 4520160001410 등록번호 4500683110000	김재훈	2026.09.30

※ 당사의 상표(서비스표) 지식재산권은 현재 (주)트렌차이즈 대표이사 김재훈으로부터 상표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므로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PH038』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6.05.26

※ 『PH038』 직영사업을 시작한 날 : 해당사항 없음

2. 『PH038』 연혁

☞ 『PH038』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트렌차이즈	PH038	김재훈	2016.05.26.~현재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42-1

3. (PH038) 업종

영업표지	업종	
PH038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국식	베트남쌀국수

4.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 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지역별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3	-	3	3	-	3	3	-
서울	2	2	-	2	2	-	2	2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1	1	-	1	1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당사의 직영점 및 가맹점의 자세한 현황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는 점포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

☞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년	4	-	1	-	-	3
2022년	3	-	-	-	-	3
2023년	3	-	-	-	-	3

6.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PHO38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가맹본부	(주)트렌차이즈	아리가또맘마	20110100228	기타 외국식	34/0	27/1	19/0
		밀회관	20190495	주점	35/0	48/0	40/0
		미래파	20211838	주점	2/0	2/0	0/0
		유어오븐	20213059	커피	0/0	0/0	0/0
		티프리피자	20214739	피자	0/0	0/0	0/0
		생마차	20231209	주점	0/0	0/0	14/0

당사는 2016.07.01에 트렌차이즈로부터 [아리가또맘마]가맹사업을 인수하였습니다.

7.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상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 또한, 위 추정 매출액은 가맹점이 위치한 지역 및 상권, 실제 매장의 크기, 실제 운영한 영업개월 수,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이 상이하므로 전국 평균 매장의 평균 매출액이 아니며, 귀하가 실제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추정 자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귀하가 요청할 경우 열람이 가능합니다.

8. [PH03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PH038]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3	2,181일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해당사항 없음

10.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당사에서 [2023년]에 본사보유 가맹사업 브랜드인 [아리가또맘마/밀회관/PH038/미래파/유어오븐/티프리피자/생마차]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7]쪽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금액은 당사의 2023년도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사는 각 가맹사업 별로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26,464	226,464	-	
광고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판촉	소계					
	-					
	-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또는 가맹점이 개점한 익일에 수령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 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트렌차이즈	가맹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가맹금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PHO38』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기타 정한 품목 외 별도 구입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최초 가맹금 : 개시지급금, 예약금, 할부금의 첫 지불액, 선급임차료, 설비구입대금 등 명칭이 어떻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 또는 계속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7,700				(예외조건)
가맹비	5,500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또는 개점일 익일까지	반환 안됨	가맹점모집 및 개점지원비로 비용소요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정산 후 반환
개점 전 교육비	2,200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또는 개점일 익일까지	반환 안됨	개점 전 교육비로 비용소요	개점 전 교육 미 이수시 반환

※ 가맹비 대가 내역 : 1. 당사가 정하는 기준의 가맹점운영권 권리 부여 (20%), 2. 영업지역 부여 (10%), 3. 입지 선정 시 조언 (10%), 4. 개점 시 가맹점 운영 및 영업 노하우 제공 (20%), 5. 개점 시 영업활동 지원 (20%), 6. 가맹점 운영을 위한 매뉴얼 등 각종 자료 제공 20(%)

※ 가맹비 반환 조건 : 개점 이전 해지, 개점 이후 해지

1. 개점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당사는 가맹금 입금 후 설비공사 시작 전 양 당사자 상호 합의 하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행했던 금액과 그때까지 당사가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을 정산 후 10일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계약 이행보증금 외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개점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귀하는 가맹점 영업을 개시된 이후에는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가맹비 구분 기준의 특수매장은 영업지역 구분 기준의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역사 등 집합매장 내 가맹점과 동일합니다.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해당 사항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합계	7,700	
가맹비	5,500	부가세포함
개점 전 교육비	2,200	부가세포함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 또는 가맹점이 개점한 익일에 수령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 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비고
합계		32,772	면적 33㎡당 금액		39.6㎡(약12평)기준
인테리어	(요청시)가맹본부	19,030	1,585	시공 7일 전	3.3㎡당 160.4만원 감리비 : 33만원(평당)
주방설비 및 집기	(요청시)가맹본부	13,420	1,118	시공 7일 전	
POS 시스템	가맹본부	-		주문과 동시에	키오스크,대기전광판, 백업단말기 일체
기타 소모품비	가맹본부	322		주문과 동시에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 한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관리감독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설비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자체 시공하는 경우 당사는 직원을 파견

하여 이를 관리 및 감독하고, 시공 매뉴얼 제공 및 도면 감리, 인테리어 및 간판 시공 감리비용으로 평당 금삼십삼만원(₩330,000)<부가세포함>, 주방설비 시공 관리감독 비용으로 금이백이십만원(₩2,200,000)<부가세포함>을 시공 시작 전일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필수 구입 내역 : 소비자 판매 제품의 규격화를 통한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의탁자 및 초도물품 등은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그 밖의 영업신고 및 교육,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TV 시청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자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 →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 시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기준	계약·채용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보건증 소지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 내역 중 별도시공 내역은 귀하가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최초 가맹금 납부 방법

☞ 영업 개시 이전 부담하는 최초 가맹금은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비 및 집기 등의 대금 결제 시 일시불 결제가 어려운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판촉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리모델링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 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열티)	가맹본부	110	매월 말일	반환 안됨	관리비로 비용소요	330 (모바일플랫폼 불참시)
리스료		해당 없음				
상품광고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광고 총비용의 50% 중 귀하 부담분	명세서 수령 후 10일 이내	반환 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상품 및 가맹점모집병행 광고 안함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실제 소요되는 판촉비용 중 귀하 부담분	명세서 수령 후 10일 이내	반환 안됨	광고비로 비용소요	가맹점사업자 간 균등부담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정산				
간판류 임차료		해당 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 점포환경 개선에 따른 변경 비용		해당 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발생 시 산정	시공 시작 전일 까지	반환 안됨	교체.보수 비용소요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체.보수사항 발생 시 귀하 부담
리모델링 비용		해당 없음				
재고관리비용		해당 없음				
회계처리비용		해당 없음				
POS 사용료		해당 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약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반환 안됨	지연이자 비용정산	해당 지급 항목의 약정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로열티 대가 내역 : 당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영업표지 사용권, 기타 당사가 소유한 등록 권리 사용권, 당사의 노하우 제공, 교육·훈련 및 경영지도 등에 대한 대가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 VAT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 당사는 귀하의 재고관리에 대한 감독은 실시하지 않으며, 회계 범위의 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매출액 현황만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해당 없음		
회계처리	가맹점 매출액 현황 보고	월 1회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 보고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제7조2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가맹점운영권 권리 부여 및 제8조1항에서 정하는 영업지역 부여의 대가에 해당하는 비용(최초가맹비의 30%)의 재가맹비를 최초 갱신 1회에 한하여 계약 종료 전일까지 부담하여야 하며,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전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재가맹비	최초가맹비의 30%	종료 전일	반환 안됨	관리비로 비용소요	귀하의 귀책사유 없는 해지 시 반환 가능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가맹본부와 계약을 유지하거나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일부 가맹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환하는 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의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귀하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귀하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가맹계약을 해지합니다. 이에 귀하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 위의 조건은 귀하가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운영하는 『PHO38』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귀하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의 부담으로 개점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초래된 행정적 비용 및 개점 전 교육비, 계약 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인이 부담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정산하여 10일 이내에 상환합니다.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영업표지 등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의 시스템이 반영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환 또는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공급된 물품 중 유통기간 이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물품 등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영업표지 등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일십만원(₩100,000)<부가세없음>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철거 완료 후 추가금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PH038]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당사가 정한 필수 공급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2023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PH038]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 1) 당사는 [PH038]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당사가 [PH038]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거래액의 %)	금액	비고
해당없음	-	-	-	-	-
계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판매상품명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지정한 품목만 판매하여야 함	1차 : 구두 경고 2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4차 : 물품공급 중단 5차 : 가맹계약 해지	당사가 지정하는 품목은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	-------------	-----------	--------

경쟁업체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1차 : 1차 서면 시정조치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및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 금지	2차 : 2차 서면 시정조치
			3차 : 물품공급의 중단
			4차 : 가맹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귀하는 당사가 제시한 권장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권장가격은 당사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가격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쌀국수를 주메뉴로 하는 기타외국식	PH038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 읍/면/동 기준 1개 가맹점 개설	가맹계약서 [별첨 1] 지도에 표기

※ 귀하의 영업지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 세대수, 거주 인구수, 유동 인구수, 가맹점 간 거리, 지역 상권의 특성, 주요 근린시설,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귀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마트, 공항, 호텔,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내, 지하철과 연결되어 있는 역사 등 집합매장 내 가맹점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되어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대형마트 등 특수지역 입점 매장 중 특수상권에 해당하지 않는 매장의 기준은 [홀 / 주방]이 구분된 20평 이상의 단독매장 형태의 가맹점은 특수상권에서 제외하며, 영업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조정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협의하는 방법

☞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4에서 정하는 사유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조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영업지역 변경 완료 (→가맹점사업자 미동의→영업지역 변경 불가)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 통지→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가맹점사업자 동의 시 15일 이내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규 점포 입점 불가)

※ 당사가 영업지역을 재조정하기 위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귀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④ 상호간 통합 상권제에 관한 선택 없는 상황에서 본인의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광고 홍보 행위를 진행한 가맹점사업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의 영업지역 내에 상대방 가맹점 홍보를 자신의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PH038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귀하는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가맹점 위치 및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귀하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귀하에게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귀하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 당사에서는 『포삼팔』 영업표지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 당사는 『포삼팔』 영업표지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 『PH038』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2)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요구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D,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가맹본부의 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위 표의 결과에 따라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재계약 및 종료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또는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또는 D. 양자가 합의하여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하는 경우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제7조2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가맹점운영권 권리 부여 및 제8조1항에서 부여하는 영업지역 보호의 대가에 해당하는 비용(최초가맹비의 30%)으로 재가맹비를 계약 종료 전일까지 부담하여야 하며,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전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또는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 귀하는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가맹점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당사의 영업표지 등 당사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당사의 시스템이 반영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반환 또는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의 영업표지 등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위약금으로 위반일 1일당 금 일십만원(₩100,000)<부가세 없음>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철거 완료 후 추가금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그 사유 및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본 계약의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 또는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귀하는 각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해지 사유
1. 귀하가 본 가맹계약서 제24조(물품 공급의 중단) 각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귀하가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설비 관리감독비 등 당사와 약정한 각종 가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귀하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4.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귀하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7. 당사가 귀하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8.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9. 당사 또는 귀하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당사가 정하는 물류공급 중단 사유

7일 전 서면, SMS,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예고 후 미 시정 시 물품공급 중단 사유
1.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가 공급한 물품 등에 관한 대금 지급의무를 30일 이상 지체하거나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로열티, 광고·판촉 분담금 등의 가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하는 경우
3. 귀하가 당사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정한 필수 공급 품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입한 물품이 당사가 정한 품질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 귀하가 당사의 각종 매뉴얼 기준에 따른 관리 기준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6.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가 실시하는 필수 교육, 경영지도 등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
7.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가 정하는 상품(신메뉴포함)을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당사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 방침 및 관리 감독 규정을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이행

하지 않는 경우
9. 귀하가 당사의 승인 없이 가맹점을 이전하거나 양도(사업자 명의변경 포함)한 경우
10. 귀하가 당사와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11. 귀하가 당사와 협의하여 정한 광고 및 판매 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2. 귀하가 당사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서면, SMS, 이메일, 카카오톡 등 또는 인트라넷 게재를 포함한 시정 공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13. 귀하가 경업을 하거나 귀하의 직원 등을 통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타인에게 유출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귀하가 가맹계약서 4조("을"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않는 경우
15. 귀하가 기타 본 계약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물품 공급 중단 사유 ☞ 즉시 해지 사유와 동일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 - 1
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령 위반을 근거로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조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 귀하와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양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것은 문서는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환매	불가능	-	환매제도 운영 안함
양도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상속	승인 후 가능	가맹점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 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교육비 부담 및 개점 전 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 양도양수 시 가맹계약 외 기타 부동산조건 및 권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 귀하가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의 승인 후 점장 등을 고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	-

※ 당사가 승인하는 대리인의 조건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또한, 영업 중 당사가 지정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개점 전 교육비는 귀하 또는 교육을 이수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귀하는 계약기간의 존속 중 대한민국 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의营业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귀하가 경업을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쌀국수를 주메뉴로하는 기타외국식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허가 여부 통지→완료

8.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당사는 가맹점의 영업일수를 제한하나, 영업시간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제한 영업일수	비고
11:00 ~ 22:00	주 6일, 월 25일 이상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불가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는 귀하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1명	직접 근무 권장	49.5㎡(약15평) 기준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위생, 매출현황, 각종 설비 관리, 필수공급 원부재료 사용 여부 및 가맹점 관리현황 등	담당자 매장 방문→관리내역 점검 →상담일지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월 1회 이상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50%	총 광고비의 50%	광고기획→가맹점사업자 분담 분 산정→1개월 전 분담금통 지서 발송→수령 후 10일 이내 지급	가맹점사업자간 균등부담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총 광고비의 0%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해당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판촉물 제작	카다로그 등 판촉물 제작비 총 비용	해당 없음	판촉기획→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10일 이내 지급	가맹점사업자간 균등부담
	할인 행사	판촉기획에 소요되는 총 비용	실제 판촉에 소요되는 총 비용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 행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휴서비스 진행 안함
모바일플랫 폼	제휴 행사	협의	협의	사전 협의 후 진행	

※ 당사는 상품광고와 가맹점 모집광고를 병행하지 않으며, 할인카드 및 멤버십 제휴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 표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가 정하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는 본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시스템, 조리법 등 영업상 비밀이나 노하우를 본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귀하는 당사의 설비 매뉴얼, 가맹점 운영 매뉴얼,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귀하는 당사의 계약 내용과 시스템, 운영매뉴얼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본 계약 브랜드와 동일한 업종을 창업 또는 지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4) 동조 1항 내지 3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가족 및 직원 등 피고용인에도 해당됨에 따라 이들의 귀책사유로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귀하는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귀하는 당사에 게 위약별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귀하가 별첨 [2]의 공급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귀하가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별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원)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5) 귀하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해지하게 되는 경우 위약별로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체시 매1개월마다 연체금액의 2%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6) 귀하가 계약서 제25조1항(상품판매 및 판매가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오백만원(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7)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 8)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营业을 개시할 때 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9.5㎡(약15평) 기준 / 당사 전체 시공시	약[40]일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0(1일)	비용 없음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점포 현황 제공	D-39(1일)	비용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4~38(15일)	자체비용소요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23(1일)	자체비용소요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예치: 계약체결 2개월 후 또는 개점 익일까지 납입으로 대체	D-21~22(2일)	
점포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용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19~20(2일)	자체비용소요
각종 공사	- 인테리어 및 간판 시공 - 의탁자 등 집기 입고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D-4~18(15일)	P.8 5.가맹점사업자의 부담부분 참조
교육	- 개점 전 교육 실시	공사기간중(8일)	9-12쪽 참조
개점준비마무리	- 집기비품, 소모품, 초도물품 입고완료 - 외부 홍보 및 개점 준비 완료	D-1~3(3일)	자체비용소요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자체비용소요
예치대상가맹금 납부	- 예치대상 가맹금 납부	개점 익일	9쪽 참조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 개설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가맹 상담, 점포 선정, 임대차 계약, 가맹계약 체결 등의 소요시간과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 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당서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 갱신 시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등 불가피한 경우 매장의 노후시설이나 설비의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계약 종료 전일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귀하의 비용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비고
개점 시 영업활동 인력지원	개점 시 관리자 1인 인력 파견	계약기간준수 영업방침준수 계약내용준수	개점 2일 전부터 3일간	약 150만원 한도	지원조건 위반 시 즉시 청구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방식 및 내용

☞ 당사는 귀하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귀하와 협의하여 당사의 비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귀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귀하의 비용부담으로 당사에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당사는 귀하와 협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을 기재한 경영지도 계획서를 제시한 뒤 일정에 따라 경영지도를 진행하며, 경영지도 후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조기 안정화 광고지원	가맹점 오픈시 조기안정화를 위한 광고지원	신규 오픈가맹점	오픈일로부터 1개월간	SNS광고 및 블로그 리뷰 등	
매출부진 경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경영 컨설팅 제공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점 전 교육	1일차	제품 및 이론 교육	이론	개점 전일까지	필수
	2일차~4일차	매장운영 실습	실습		
재교육	개점전 교육과 동일 (1일 교육)		상 동		필수
수시교육	신 메뉴 출시 및 조리매뉴얼 변경,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일 교육)		실습	추후 공지	필수
특별교육	가맹점주 요청사항		당사와 협의		선택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4일	2,200,000	개점 익일에 수령
재교육	1일	550,000	개점 익일에 수령
수시교육	1일	실비	추후공지
특별 교육	추후 공지	가맹점주부담	

※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을 정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 및 귀하의 대리인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갱신거절 사유가 되며, 물품공급중단 사유 및 가맹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당사가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당사는 2023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당사는 2023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당사는 2023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2] 당사가 정하는 원부재료 필수 공급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3]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 4]

(가맹희망자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가맹본부 (주)트렌차이즈로부터 포삼팔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구 _____로
 _____에서 제공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
 토하였습니다.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
 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
 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인)
전화번호			
주소			

_____년 _____월 _____일 가맹본부 대표(담당자) 성명: _____인

-----간인후 절취-----

(가맹본부 보관용)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1. 본인은 가맹본부 (주)트렌차이즈로부터 포삼팔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구 _____로
 _____에서 제공받았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
 토하였습니다.

2.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
 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
 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년 월 일 (인)
전화번호			
주소			

_____년 _____월 _____일 가맹본부 대표(담당자) 성명: _____인